

우체국~성원전업사
간성 도시계획도로

한 집 때문에 2년째 포장 못해

주민들 “간성초교 등하교 때 불편 극심” ... 문의도 전 부군수 “도로라면 길 위에 집이 뜨게 된다”

간성읍 신안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낙장 논란 고성군 “보상협의 계속, 강제수용 계획 없어”

고성군이 지난 2009년 간성읍 신안리 간성우체국~성원전업사 구간 폭 8m, 길이 3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으나, 허버드 학원~멜로지아 음악학원 구간 약 50m가 2년째 포장되지 않아 정상적인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도 참고〉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간성초교와 접해 있어 등하교시 극심한 혼잡을 보이는데다, 인근에 학원이 많아 간성을 전체 주민들을 위해 시급하게 나머지 구간의 포장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특히 이 구간 도로 포장이 중단된 유일한 이유가 고

성군 부군수를 지낸 문의도씨의 토지수용 불허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자, 문씨에 대한 고성군의 ‘전관예우’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고 있다.

인근에 건물을 갖고 있는 주민 함신근씨는 “도로가 끊어지다 보니 간성초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주변이 대혼잡을 겪는다”며 “딱 한 사람 때문에 도로포장이 안 되고 있는데, 부군수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함씨는 고성군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몇 년전부터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만일 일반 농사꾼이라면 그냥 뒀겠느냐. 이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의도 전 부군수는 “출입문이 도로 쪽으로 나게 되고, 집이 길 위에 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

에 도저히 승낙할 수가 없다”며 “과거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할 때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도 없이 책상에 앉아 지도를 보고 줄을 죽 죽 긋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인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주민 김원기씨는 “금수리 등 간성읍내에 최근 생긴 다른 도시계획 도로를 살펴보면 문씨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더 심하게 불편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며 “그분들은 도로개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서 땅을 내놨는데, 유독 문씨만 고집을 피우니 답답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종락 간성읍 변영회장은 “어차피 계획에 잡힌 도로라면 양보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간성을 주민 전체를 위한 일인만큼 어르신이 큰 용단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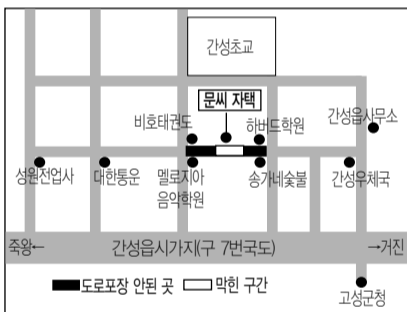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언젠가는 포장을 해야하지만, 우선 순위로 보면 거진지역 등 보다 시급한 곳이 많다”며 “보상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 구간 포장을 위해 당장 강제수용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간성읍 신안리 간성우체국~성원전업사 구간 도시계획도로 중 포장이 안되고 있는 허버드 학원~멜로지아 음악학원 구간.

논란이 일고 있는 구간 약도



불법전용 임야 현실 지목으로 양성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생계형 농업과 군사시설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임야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던 주민과 군부대 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고성군은 지난 1월 5일 개정 공포된 ‘산지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를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대상은 5년 이상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논, 밭, 과수원 등)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다.

신청은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하면 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면 되지만,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구비서류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지적측량성과도,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

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군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급 구

주방아주머니 · 써빙(여)

주방아주머니(타임제 근무, 3명)

- 오전 6시~오후 2시
- 오전 8시~오후 4시
- 오후 3시~오후 10시

써빙(1명)

- 오전 9시30분~오후 9시30분

● 이력서 제출 ● 급여 상담 후 결정

이모순두부

속초시 노학동 ☎011-9791-5500

‘고성군의 미래, 명태에게 길을 묻다’ 이번호 기사 넘쳐 쉽니다